



개인연금의 이해(4): 개인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차이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1층의 국민연금, 2층의 퇴직연금, 3층의 개인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이루어진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경제활동기의 잉여소득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.
- 개인퇴직계좌(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)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, 근로자가 퇴직, 중간정산, 직장을 옮길 때 받은 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임.
 -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의 직장 이전 시 퇴직급여 또는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의 기능을 하는 개인형과 10인 미만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.
 - 개인형은 이직, 중간정산 등의 사유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중도에 받은 일시금의 80% 이상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경우 과세가 연금소득 발생 시로 이연됨.
 - 기업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부담할 경우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손비 인정이 가능하며, 근로자의 추가 기여 시 타 연금과 합산하여 소득공제혜택이 400만 원 한도에서 제공됨.
 -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주체가 되어 금융회사에 개인계좌를 개설하고,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하며, 그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다는 점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함.
 - 또한, 개인이 자발적으로 금융회사에서 가입하고,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며, 종신연금, 확정연금, 일시금 등으로 수령이 가능하고, 원리금보장형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연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.
- 그러나,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제도로써 독립된 근거법에 의해 다양한 수급권 보호가 가능하고, 보험료 계산기초율이 다르며,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운영하는 개인연금과 명확한 차이가 있음(〈표1〉 참조).

- 향후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자영업자 및 타 퇴직연금 가입자 등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명칭과 제도가 변경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.

〈표1〉 개인퇴직계좌와 개인연금의 차이 비교

구분		개인퇴직계좌	개인연금 ¹⁾
목적		• 표준적인 노후생활 영위	• 개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 영위
주무부처		• 고용노동부	• 금융위원회
취급금융기관		• 보험회사, 은행, 증권사, 투신운용사, 신탁회사, 농수협, 우체국, 신협	• 보험회사, 은행, 증권사, 투신운용사, 신탁회사, 농수협, 우체국, 신협
가입 단계	가입대상	• 근로자	• 18세 이상 전 국민
	가입형태	• 개인형(중간정산 등), 기업형(영세기업)	• 연금저축
	계좌개설	• 필수	• 좌동
	부담주체 및 한도	• 근로자(개인형, 퇴직급여의 80% 이상) • 기업(기업형, 연 임금총액의 1/12 이상)	• 개인(400만 원 한도)
계산기초율		• 임금상승률, 이자율, 사망률, 탈퇴율 등이 수시로 변동하는 개방형 구조	• 사망률, 이자율 등이 고정되어 보험료가 산출된 폐쇄형 구조
운용 단계	운용주체/운용책임	• 근로자[운용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]	• 금융회사[운용손익이 금융회사(원리금 보장형) 또는 개인(실적배당형)에 귀속]
	담보대출	• 극히 제한적 가능(중도인출도 동일)	• 가능(중도인출도 동일)
	원금보장 여부	• 근로자가 원리금보장형 또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영 가능	• 개인의 금융회사 선택에 따라 원리금 보장형 또는 실적배당형으로 가입 가능
지급 단계	수령기간	• 55세 이상(기업형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)	• 10년 이상 납입, 55세 이상 수령
	지급방식	• 종신연금, 확정연금, 일시금(퇴직소득세 부과)	• 좌동(단,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세 22% 부과)
세제혜택		• 법인세 손비인정, 추가 기여시 소득공제 혜택(기업형), 연금소득세 부과	• 소득공제혜택과 연금소득세 부과
수급권 보호		• 타인에게 양도, 담보제공, 압류 불가능(단, 지급단계 시 50% 한도 압류 가능)	• 예금자 보호제도
예금자보호		•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영될 경우 적용	• 좌동
근거법		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	• 조세특례제한법
기타		• 2005년 12월 도입	• 2001년 2월 도입

주: 2001년에 도입된 신 개인연금인 세금우대 연금저축을 기준으로 함..